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정기 점검 실시 등〉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및 시정 명령 신설	2
2. 외국인 취업교육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및 인권 교육 추가	8
3.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 설치	1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2일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및 시정 명령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발견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u> <u>1. 사업장의 근로조건</u> <u>2.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u> <u>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u>

4.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u>수 있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u>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u>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¹⁾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근로조건, 기숙사 설치 및 운영현황, 안전조치·보건조치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발견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처우로부터 외

1)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권한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내용 및 체계가 서로 맞지 않고, 현행법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벌금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으며, 현행법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³⁾ 취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점검계획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 및 현행법상 점검할 범위는 사실상 동일하고,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3)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어⁴⁾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⁵⁾ 사용자 등에게 추가로 벌칙이 부과되는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조사·검사 등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지자체별로 달리 판단될 여지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판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지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토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4)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외국인 취업교육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및 인권 교육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 취업교육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및 인권 교육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u>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u> 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 ----- ----- ----- ----- <u>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⁶⁾,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을 16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6)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있어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 사항을 과목에 편성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부터 보호를 도모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령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의 직장문화나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에 관한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등 취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또한 이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교육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9호

[외국인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⁹⁾]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5시간
고충상담절차 등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3시간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5시간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시간

9)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3]

3.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 설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 설치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조의3(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 <u>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등을 향상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신고센터 설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에¹⁰⁾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위탁운영¹¹⁾ 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현황]

주요내용	운영기관	2024년 예산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송출국 언어 ¹²⁾ 통역원을 통한 전화와 내방 상담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9억 7,100만원

10)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11)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2) 중국어, 베트남어, 파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16개 언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¹³⁾,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 각각 단체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지원 단체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
1	부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2	대구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인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4	광주		광주국제교류센터
5	충남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6	전북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7	경남	창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8		김해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9		양산	사단법인 희망웅상

고용노동부 또한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13)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제 다국어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고,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문 의 처
02)6788-5545